조세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내외 조세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조세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조세 의무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 등 산일전기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및 이에 준하는 공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2.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3. 조세 회피: 상업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사업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 구조, 계약 형식 또는 거래 장소를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세제 혜택의 활용은 인정하되, 상업적 실질이 없는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는 지양합니다.

4. 이해관계자: 주주, 투자자, 정부 및 과세당국, 지역사회 등 회사의 조세 정책, 납세 활동 및 조세 관련 정보 공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산일전기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사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협력사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조세 법령 준수와 투명한 납세 문화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조세 관리 원칙 및 체계

제4조 (조세 법령 준수)

1. 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조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하며, 신고·납부·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목적에 따른 세제 혜택, 공제·감면 및 조세특례의 활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1. 의사결정: 이사회 및 경영진은 조세 리스크를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집니다.

2. 전담 조직: 회사는 재무부서 내에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두며, 해당 기능은 조세 신고, 납부, 검토 및 관련 자료 관리 등 조세 실무를 수행합니다.

제6조 (투명한 거래 및 정상가격 적용)

1. 회사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2. 회사는 조세피난처 또는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허용하지 않으며, 실질이나 합리적인 사업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이해관계자 소통

제7조 (과세당국과의 관계) 회사는 과세당국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투명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 시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법적 권리 및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제8조 (정보 공개) 조세 납부 현황, 조세 관련 정량정보 및 정책 이행 성과는 관련 법령, 공시 기준, 영업상 비밀, 경쟁상 민감성 및 내부 검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조세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6.05.13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